

3110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,6층(청풍프라자, 두정동) / Tel. 041) 567-6764 / Fax. 041) 567-7996

문서번호 : SW-2020- 1228 - 1
 시행일자 : 2020. 12. 28.
 경유 :
 수신 : 개인사업자(성실신고및 전문직)
 참조 :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
 발신 : 선우회계법인
 제목 : 2021년 1.1.이후 시행 업무용승용차(VAT불공)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안내

선 결			지 시
접 수	일자		결재 · 공람
	시간		
	번호		
처리과			
담당자			

1. 수고가 많으십니다.
2.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2021.1.1. 이후 보험(★특약추가)에 대하여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(임직원 전용보험)을 가입해야 합니다. (단, ※ 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)
3. 업무전용자동차보험(임직원 전용보험)을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만이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사업자별로 2대이상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
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: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
※ 전문직 사업자 :

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

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의사업, 한의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※ 업무용승용차 :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(VAT)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 (임차:리스, 렌탈 차량 포함)
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 예시 (화물차, 9인승이상승합차, 1,000CC이하 경차)

3. 관련 사이트

- ① 다음카페 "조세실" > 업무용승용차(VAT불공) > 필독
- ② <http://cafe.daum.net/transtax/R8Xs/58>